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77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최민희 · 권향엽 · 김 현
남인순 · 노종면 · 박해철
양문석 · 이용우 · 이재관
이정현 · 이주희 · 조인철
진성준 · 한민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녹화·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비공개를”을 “공개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취재원 등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⑩ 중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조정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조정의 주요 진행 사항

2. 당사자 및 조정위원, 참고인의 발언

3. 조정안 및 조정 결과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회의 공개와 조정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① ~ ⑦ (생략)	제19조(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조정은 <u>비공개</u> 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중재위원회규칙</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⑧ ----- <u>공개</u> 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중재부의 결정</u>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설></u>	1. <u>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u>
<u><신설></u>	2. <u>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신설></u>	3. <u>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u>
<u><신설></u>	4. <u>취재원 등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u>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⑩ <u>중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조정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u>
	1. <u>조정의 주요 진행 사항</u>

<u><신 설></u> <u>⑩</u> (생 략)	<u>2. 당사자 및 조정위원, 참고인</u> <u>의 발언</u> <u>3. 조정안 및 조정 결과</u> <u>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회</u> <u>의 공개와 조정회의록 작성 .</u> <u>보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u> <u>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u>⑫ (현행 제10항과 같음)</u>
---	---